

'정상' 판정 이후 동일업종에 연속 근무 중 합병증 사망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

서울고법 93구9776

[판시사항]

1989년 10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'정상' 판정을 받은 망인이 사망시까지 30여년간 광부로서 근무하여 왔고 판정 이후 ○○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진폐증 및 진폐증이 악화된 합병증으로 폐렴, 폐암 등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[판결이유]

이미 사망한 권○○는 1989년 11월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인 ○○탄광에 선산부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. 그런데 1992년 5월 25일 기침과 객담 및 가슴의 통증이 심해져 ○○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6월 27일 강원 정선군 사복읍 소재 ○○보건원에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0시경 사망하였다.

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』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1992년 9월 18일 위 망인이 1989년 10월 이직자 건강진단시 진폐정밀진단 비해당자로 판정되었

고, 『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망인이 ○○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병명이 진폐증과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.

원고는 위 망인 권○○의 사체검안서상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폐암에 있어서 사망한 것이라는 정확한 소견이 없으므로 위 망인이 오랫동안 광부로 일하면서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가면서 그 합병증으로 폐렴, 폐혈종, 폐암에 의한 척수전이, 임파선종, 부종, 영양실조, 빈혈, 욕창 등이 나타나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. 이는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이에 여러 증거들과 을 제3호증(요양결정결의

서), 을 제6호증(○○병원진료기록), 을 제7호증의 1, 2(의학적 소견조회서 및 동 회신), 을 제8호증(개인별 진폐병력리스트), 을 제9호증(자문소견서), 을 제10호증(노동부 예규)의 각 기재에 증인 강○○의 증언 및 당원의 ○○보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.

(1) 위 망인은 1969년 10월 5일경 ○○광업소에 후산부로 입사한 후 30여년간 광부로서 근무하여 왔다. 1990년 8월경부터 기침, 객담 등이 심하여져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와 약국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1992년 5월 25일 근로복지공사 ○○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6월 27일 ○○보건원에서 사망하였다. 그런데 ○○병원 입원 당시의 병명은 '폐렴, 폐혈중, 폐암에 의한 척수전이 임파선종, 부종, 영양실조, 빈혈, 욕창' 이었고, ○○병원에서는 같은 달 28일 위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"양 폐 공히 흉곽에 유착이 심하며 늑강 내에 약 1,000cc 가량의 삼출액이 있고, 심장은 정상 범위 내로 관찰되며, 진폐는 암갈색의 반점이 관찰된다."는 부검소견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정지, 중간선행사인은 무산소증,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진단하면서 부검당시 육안으로 구별되는 흉곽 내 소견(탄이 포함된 결절이 폐전체에서 관찰됨)으로 보아 위 망인의 진폐증은 주로 탄분에 의한 것으로써 상당히 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 위 ○○보건원의 조직검사의뢰를 받은 강남 ○○성모병원 병리학교실에서는 같은 해 7월 13일 위 망인에 대한 폐의 조직검사결과 양쪽 폐 진폐증, 평편세포암, 양 폐 전엽 및 심장전연으로 진단하였다.

(2)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○○지방노동사무소의 자문의는 "1989년 10월 7일 이직자 건강진

단 실시 결과 진폐정밀 진단시 비해당자이고, ○○병원 진료차트상 진폐증이라는 상병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과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된다."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, 노동부 자문의는 "위 망인이 진폐증 환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본 사망은 폐암, 폐암에 의한 척수전이 임파선종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"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.

살피건대, 위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○○보건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위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있는 반면 ○○지방노동사무소의 자문의는 위 망인이 진폐증과는 상관없이 사망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노동부 자문의는 위 망인이 진폐증환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.

○○지방노동사무소 자문의와 노동부 자문의가 앞서와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은 위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기록일지만에 근거한 것으로써 실제로 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고 부검을 실시한 후 발행된 위 ○○보건원의 사체검안서에 비교하여 신병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점 및 위 망인이 1989년 10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'정상' 판정을 받았으나 위 망인은 1960년 10월 5일 이래 사망 시까지 30여년간 광부로서 근무하여 왔고 위 판정 이후에도 ○○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진폐증이 악화되어 가면서 합병증으로 폐렴, 폐암 등이 나타나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따라서, 위 망인의 사망은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 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 